

정안맨션3차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주민 공람·공고

우리 구 성수동2가 265-4번지 정안맨션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(서면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2월 30일

성 동 구 청 장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칭 : 정안맨션3차 소규모재건축사업
- 나.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65-4(3,866㎡)
- 다. 시 행 자 : 정안맨션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(조합장 직무대행 장영림)
- 라. 조합설립인가일 : 2020. 7. 7.

2. 취소사유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

3.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

- 가. 제출기간 : 2025. 12. 30.(화) ~ 2026. 1. 14.(수)
- 나. 제출방법 : 본 공람·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성동구청 주거정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본 공고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.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286-657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